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 9. 1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가금결산 승인안

<총괄>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365,754,370,608	307,086,584,816	84.0	20,156,842,050	38,510,943,742

<기획재정국>

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이월액	집행잔액
총계	16,743,697,000	9,325,920,799	55.7	255,200,000	7,162,576,201
기획예산과	9,479,275,000	3,102,088,449	32.7	-	6,377,186,551
지역경제과	5,105,425,000	4,452,889,460	87.2	255,200,000	397,355,540
재무과	544,440,000	438,978,500	80.6	-	105,461,500
세무 1과	987,169,000	821,244,870	83.2	-	165,924,130
세무 2과	627,388,000	510,719,520	81.4	-	116,668,480

<기획재정국 이월액 내역>

부서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총계	255,200,000	-	255,200,000	
기획예산과	-	-	-	
지역경제과	255,200,000	-	255,200,000	
재무과	-	-	-	
세무 1과	-	-	-	
세무 2과	-	-	-	

<기획재정국 집행잔액 내역>

부 서	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총 계	7,162,576,201	433,151,764	30,000,000	738,237,677	161,650,760	5,799,536,000
기획예산과	6,377,186,551	54,584,864	30,000,000	493,065,687	-	5,799,536,000
지역경제과	397,335,540	210,249,840	-	73,314,620	113,771,080	-
재 무 과	105,461,500	34,370,060	-	23,211,760	47,879,680	-
세무 1 과	165,924,130	125,150,000	-	40,774,130	-	-
세무 2 과	116,668,480	8,797,000	-	107,871,480	-	-

[세입세출 결산]

○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7억 5,562만 5,608원이 포함된 3,657억 5,437만 60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65억 4,592만 4,61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5%로 초과 징수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059억 9,544만 6,221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2.7%이지만 전전년도의 90.4%에 비해 2.3%, 전년도 91.3%에 비해 1.4% 증가하여 년 평균 1.2%의 상승추세로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055억 6,658만 4,2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1억 1,706만 2,641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5.7%로 전전년도의 83.7%보다 2%가 증가하였으며 전전년도 징수율 81.9% 비하면 무려 3.8%로 년 평균 1.9% 씩 증가되어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징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의 지난년도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1억 5,449만 8,930 원 대비 약 56.6%에 해당하는 6억 5,322만 2,960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54%보다 실제징수율이 2.6%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6,328만 6천원의 약 116%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25.8% 보다 9.8% 감소하였으나 년 평균수납실적 으로 볼 때는 120.9%로 향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년도 채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여 할 것이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채납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4억 9,413만 1천 원을 포함한 167억 4,36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93억 2,592만 799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2.8%에 해당하는 71억 6,257만 6,201원으로 집행잔액(불용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3,315만 1,764원, 예산절감 3천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억 3,823만 7,677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165만 760원, 예비비 집행잔액 57억 9,953만 6천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65억 1,346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건에 7억 1,392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총액대비 89%에 해당하는 57억 9,95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건에 4억 9,413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 3억 9,559만 2천원 중 1억 4,039만 2천이 지출되었고 2억 5,52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4,413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금]

○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9,691만 8,744원에 당해 연도 3억 5,875만 892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12억 3,816만 7,852원이 되겠고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13억 546만 9,743원에 당해 연도 2억 1,776만 5천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210억 8,770만 4,743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05쪽~ 4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안 건 명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